

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20. 3. 13.>

- []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
- []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
- []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

재발급 신청서

* 어두운 칸(■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7일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신청인 | 상호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 | 화장품제조업·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번호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번호 | |
| | 소재지 | 전화번호 | |
| | 대표자 | 생년월일 | |
| 신청사유 | | | |

「화장품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[]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, []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, []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| 구분 | 첨부서류 | 수수료 |
|----------|--|--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오염,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 또는 신고 필증 2.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| 없음 |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